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에 ‘가-25 감염예방·관리료’를, 별지 서식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I. 행위

신설

제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가25 감염예 방·관리료	감염예방·관리 료 산정기준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p>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p> <p>1) 1등급</p> <p>(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p> <p>(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p> <p>(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p> <p>(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p> <p>(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p> <p>2) 2등급</p> <p>(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p> <p>(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p> <p>(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p> <p>(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p> <p>(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p> <p>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p> <p>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p>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p>(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p> <p>(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 「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p> <p>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18.1월부터 적용)</p> <p>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p> <p>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p> <p>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p> <p>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p>
	감염예방·관리료 입력기준	<p>감염예방·관리료의 등급은 직전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에 따라 구분하며,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병상 및 입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병상 기준</p> <p>1)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일반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p> <p>2) 병상수는 전분기 매월 15일자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으로 계산</p>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p>(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p> <p>나. 인력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감염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2)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3) 감염관리 자격증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4) 감염관리의사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의사로서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인력 보수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수('17.1월부터 적용)하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감염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17년 9월 14일까지는 1,2호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1.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단, 최근 5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2.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단, 최근 3년 이내의 교육만 인정) 5)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상기 4)의 조건을 충족하는 감염관리 의사로서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함을 의미함.(단, 주 8시간 이내의 외래 진료 및 협진 가능) 6)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p>7)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및 감염관리 의사 수는 연속적 부재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p> <p>다. 인력 및 등급신청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및 의사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함.</p>

[별지 제10호 서식]

1.신규
2.변경
3.분기
(앞쪽)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적용 구분	년	분기적용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감염예방·관리료 산정현황]

① 병상수(3개월 평균)	개	⑤ 신고등급	등급
② 간호사수(3개월 평균)	명	⑥ 병상수 대 간호사 수 비(②/①)	
③ 자격 및 경력 간호사수(3개월 평균)	명	⑦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간호사수 비(③/①)	
④ 의사수	명	⑧ 병상수 대 의사수 비(④/①)	

[병상 현황]

구분	병동별	년 월 (15일자기준)		년 월 (15일자기준)		년 월 (15일자기준)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허가병상수	운영병상수
일반	001병동						
	002병동						
	...						
특수	정신과폐쇄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13 구분	연번	※14 근무 형태	※15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16 세부 자격 증 취득 일자	세부 자격 증 취득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⑰근무경력			감염관리실		휴가		※11 출산대체		※12 재직 일수
												요양 기관 명	적용 일자 (km)	적용 일자 (to)	※9 병동 구분 병동 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10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간호사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⑱ 감염관리 의사 및 감염관리 전담의사 현황]

연번	⑲ 성명	※20 주민 등록 번호	※21 면허 종별	면허 취득 일자	※22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23 세부 자격 취득 일자	세부 자격 취득 일자	최종 근무 일자	※24 교육 이수 일자	※25 전담 구분	⑳근무경력			감염관리실		휴가		※11 출산대체		※12 재직 일수
												요양 기관 명	적용 일자 (km)	적용 일자 (to)	※9 병동 구분 병동 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10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 세부 작성요령은 '(별첨)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신규·변경) 통보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신규통보: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적용기준】

- 병상수 대비 감염관리 인력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등급 산정분기'의 병상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감염관리의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을 '적용분기'에 반영하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함.

적용분기	등급 산정분기		적용분기	등급 산정분기	
1분기(1월 ~ 3월)	인력	전년도 9월 15일 ~ 전년도 12월 14일	2분기(4월 ~ 6월)	인력	전년도 12월 15일 ~ 3월 14일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3분기(7월 ~ 9월)	인력	3월 15일 ~ 6월 14일	4분기(10월 ~ 12월)	인력	6월 15일 ~ 9월 14일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 '16.9.1. 이후 감염예방·관리료를 처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최초 운영일의 현황으로 산정	인력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 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
	병상수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하고 최초운영일이 포함된 월에 잔여 15일이 없는 경우 최초 운영일로 산정)

【산정현황】

- ① 병상수(3개월 평균):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②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간호사 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수(자격증 소지 및 경력 간호사 수 포함)를 의미함.
- ③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자격증 보유 간호사 및 감염관리실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자격 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이면서,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를 의미함.
- ※ 간호사 인력 산정시, 감염관리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관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 감염관리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간호사이어야 하며, 전일제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④ 의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의사 수는 감염관리의사의 수를 의미함.
- ⑤ 신고등급: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 (②/①), 병상수 대비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③/①), 병상수 대비 의사 수 (④/①)에 따른 해당 등급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 ⑥ 병상수 대 간호사 수 비: ②/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 ⑦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비: ③/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 ⑧ 병상수 대 의사 수 비: ④/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공통사항】

- ⑨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210 - 감염관리실)
- ⑩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 ⑪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의사) 신고 : 간호사(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⑬번부터 ⑮번(⑮번부터 ⑮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⑮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 ⑫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할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⑩일수는 제외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 ⑬ 구분 : 01 간호사, 02 감염관리전문간호사, 03 감염관리실무전문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 ⑭ 세부 자격증(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02.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 ⑮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 ⑯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 ⑰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감염관리 의사 및 감염관리 전담의사 현황】

- ⑱ 감염관리 의사는 1.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2.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전문의 3.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를 기재하고,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하는 의사를 기재
 - ⑳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상근, 02.대진의
 - ㉑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 ㉒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 ㉓ 세부자격: 감염관리 의사 중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인 경우 세부자격(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을 기재
 - ㉔ 교육이수일자: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3년 이내 교육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5년 3월15일 이후 교육이수일)
 - ㉕ 전담구분: 01.전담, 02.비전담
 - ㉖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의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5년 이내 경력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3년3월15일 이후 경력)
-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